

1. 제정 이유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함
- 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를 각 호로 나누어 정함(안 제2조제1항)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1호)
 -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하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2호)
 - 3) 국가중요시설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안

제2조제1항제3호)

4) 전국 또는 시·도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인 경찰력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라.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구체적 지휘할 때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전국 또는 시·도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인 경찰력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도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등 서면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